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다203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다203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20691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의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판결 선고 2021. 9. 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2069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D에게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재양도하였고 그 채권액 상당의 금원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이 이미 현실로 실현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상회복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과 피고 사이의 2012. 2.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성립 및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